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991 호 2016. 1. 28. (목)

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22호[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규정] 2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3호[하천(소하천)점용허가 고시] 1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호[도로명주소 고시] 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0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1호[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2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회
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부”라 한다)는 단장, 주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담당임무 부서장, 주무는 해당부서 임무 담당자, 단원은 감독 또는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운동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운동부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주무는 운동부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계획 수립·시행, 경기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4. 선수는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한다.

제2장 임용 및 복무

제4조(임용) 운동부의 단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 실적 경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 가.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체육전문기관, 감독이 추천한 사람

제5조(임용기간)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은 계약직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간 재계약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구비서류)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이력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8. 명함판사진 2매.
9.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및 실적증명서(지도자) 각 1부.
10.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선수) 각 1부.

제7조(복무)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를 신고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도자 및 선수의 특별휴가는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선수단은 복무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선수의 경기성적이 저조하여 향상 가능성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훈련이나 경기를 계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이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예산감축 또는 내부방침에 의거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3장 보수 및 지원

제11조(보수 등) ① 보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선수단 등급 및 평가) ① 지도자와 선수는 별표 1의 등급책정 기준에 따른다.

② 단원의 평가 및 등급부여는 1년간의 경기성적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하

며, 신규 채용의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③ 채용기간 중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전 하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훈련태도 등을 평가하여 보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① 실입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선수가 2개 분야에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으로 하며, 지도자는 각 입상선수의 최고성적 1개 분야만 지급한다.

제14조(퇴직금)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금 산정기준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기본급·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퇴직금의 청구는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한다.
4.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5.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15조(훈련)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들의 개인별 훈련 상황과 경기력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월간 훈련계획 및 훈련 평가보고서는 종료 후 6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일일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일지를 기록하여 선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연고지를 달리하여 개별훈련을 할 경우 일일훈련계획서, 월간 훈련계획서 및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각 선수단이 각종대회와 국가대표 파견 및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내회참가) ① 단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장여비) ① 선수단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여비 지급방법은 운동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도자에게 일괄 지급할 있다.

제18조(피복 및 장비지급)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준 용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 및 연봉 기준표(제11조, 제12조 관련)

구분	등급	연봉(천원)	책정기준	비고
감독	1등급	28,800~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국가대표 5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수영) ○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3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2등급	25,000~28,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국가대표 3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수영) ○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코치	1등급	23,000~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수영) ○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2등급	20,000~2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수영) ○ 수영 국가대표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선수	1등급	18,000~20,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한 사람 	
	2등급	16,800~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게임 입상한 사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관왕 이상 고득점 입상한 사람 	
	3등급	~16,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국가대표 경력 2년 이상 ○ 전국체전 등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별 영입이 필요한 사람 	

【별표 2】

수당지급기준표(제11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고
상여금	정근수당	월 봉급액의 100%	
수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정액급식비	월 200,000원	
	간식비	월 45,000원	

【별표 3】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천원)

대회명		입상별 지급금액			비고
		1위	2위	3위	
국 제 대 회	국제대회	500	400	300	
국 내 대 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00	200	150	
	기타 전국대회	200	150	100	

※ 지도자는 상위 입상선수의 최고성적 1개 분야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지 원 서

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최종학력	부터 까지	학교(학과)	졸업
전 소 속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코자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단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단지원자 성 명 (인)

붙임서류

1.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
4. 졸업(예정) 및 경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통.
8. 경기실적증명서(선수)/경기지도실적증명서(감독 또는 코치)
9. 명함판 사진 2매. (3cm×4cm)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계 약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채용기관을 “갑”이라 하고, 계약대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을)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계약조건)

가. 경기종목 :

나. 직 책 :

다. 보 수 : 연봉 원

라. 기 타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적용

제3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별도 재계약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수 및 지급방법)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조건) “을”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的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운동경기부의 부원으로서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월 3일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조퇴가 주3회인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 없이 훈련 및 경기에 불참한 경우
4. 체육인으로서의 품의를 떨어뜨린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퇴직자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명	
본인외 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퇴직자와 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의거 위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 붙임 : 1. 인감증명서 1부.
 2. 퇴직자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 . .

○ 재직기간

소속	성명	근무기간	발령청	확인인 (업무 담당자)
				(인)

○ 지급액

퇴직전 월평균 임금	퇴직금 액	확인인(업무 담당자)
		(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

【별지 제5호서식】

퇴직금 청구 · 접수 및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훈 련 일 지

20 년 월 일

감독	주무관	담당주무관	과장	결
				재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 참 자	비 고
훈 련 내 용	시 간	훈 련 내 용		장 소
	: ~ :			
	: ~ :			
특 이 사 항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장애인 선수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기력 향상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신설되는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 총 5개 장, 19개 조항

나. 주요 구성내용

- 제1장(총칙) : 목적, 구성, 임무(제1조~제3조)
- 제2장(임용 및 복무) : 임용, 복무, 휴가, 계약해지 등(제4조~제10조)
- 제3장(보수 및 지원) : 보수, 보상금, 퇴직금등(제11조~제14조)
- 제4장(훈련 및 대회참가) : 훈련, 출장여비 등(제15조~제18조)
- 제5장(준용) : 준용(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13호

하천(소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천(소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명천·무룡천·정자천·주렴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울산광역시
-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지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북구 대안동 산60-1번지 외 29필지
- 나. 면적 : 447.3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6. 1. 28. ~ 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1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원지제방길(창평동)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 241 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산 65-16	울산광역시 북구 월지체육길 212-1	2016-01-28 원지마을 제방을 지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남사동 250-3회1법지(513-5)	울산광역시 북구 통행안로 834	2016-01-28 이 지역의 시장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8-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5길 7	2016-01-28 양정이란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지의 이 지역 대표 지명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245-14	울산광역시 북구 분통골길 33-7	2016-01-28 기존 지명인 분통골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병초등학교 1008 51	울산광역시 북구 영촌7길 6	2016-01-28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89-7	울산광역시 북구 판문길 38-20	2016-01-28 판문성으로 기는길이라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00-3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2로 24	2016-01-28 호수지구를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8	울산광역시 북구 충신동 1279-2	울산광역시 북구 충신5길 19-8	2016-01-28 발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9	울산광역시 북구 충신동 1285-6	울산광역시 북구 충신3길 12	2016-01-28 발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98-3-3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21-12	2016-01-28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11	울산광역시 북구 전죽길 611	울산광역시 북구 음밀길 10-1	2016-01-28 기존 자연마을인 음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2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길 611-1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10	2016-01-28 기존 자연마을인 음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3	울산광역시 북구 흐로동 317-4	울산광역시 북구 호성로 21	2016-01-28 지명과 주변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15 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멀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성로 21(효문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1. 28.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시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효성로 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7-4	2016-01-28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6-11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일반명단 배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광학식디스크(CD)]	비고
일반용지	라벨용지		
45원/매 (A4용지)	217원/매 (A4라벨용지)	(990원 × 디스크개수)+(23원 × 면수)	

※ 최종 비용의 원단위 절사